

의안 번호	1546	[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정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] 심사보고서
------------------	------	---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: 2019. 5. 3.(화)
- 나. 제출자 : 신성봉 의원 외 5명
- 다. 위원회 회부일자 : 2019. 5. 3.(화)
- 라. 위원회 심사일자 : 2019. 5. 16.(목)

2. 제안설명 요지(신성봉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자문할 의정자문단을 설치운영하여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자문을 통해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조례 제정 목적,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(안 제1조 내지 제2조)
- 자문단 구성 등에 관한 사항(안 제3조)
- 위원 임기 및 해촉에 관한 사항(안 제4조 내지 제5조)
- 단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(안 제6조)
- 회의 및 회의참석 수당 등에 관한 사항(안 제7조 내지 제8조)
- 조례안 외의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(안 제9조)

3. 검토보고 요지 (전문위원 최인숙)

- 본 조례안은 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및 주요정책에 대한 자문을 위해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정자문단을 설치·운영하여 다양한 정책제안과 지역의 여론을 수렴하고 의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로,
- 조례 제정에 따른 제반절차를 이행하였으며, 상위법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본 조례 제정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됨.

4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근거법규

□ 「지방자치법」

제38조(지방의회의 의무 등) ① 지방의회는 지방의회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의회는 소속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116조의2(자문기관의 설치 등)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·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.